

## 2013년도 단체교섭 절차 등에 대한 합의서

경상북도교육감(이하 ‘교육감’)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(이하 ‘노동조합’)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2013년에 요구한 단체교섭의 원만하고 성실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합의서는 교육감과 노동조합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섭내용·교섭위원수·교섭일시 및 장소와 기타 교섭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교섭의 당사자)** 교섭의 당사자는 교육감과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한다.

**제3조(교섭위원회의 구성과 기능)** ① 교섭위원회는 본교섭위원회(이하 ‘본교섭위’라 한다)와 실무교섭위원회(이하 ‘실무교섭위’라 한다)로 구성·운영한다.

② 본교섭위 기능

1. 실무교섭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추인하며, 미 합의된 쟁점사항을 교섭하여 처리한다.
2. 단체협약을 체결한다.

③ 실무교섭위 기능

1. 교섭의제는 소관 과(담당관, 조정관, 감사관)별로 교섭한다.
2. 매 실무교섭위에서 다를 의제는 실무교섭위 개최 5일 전까지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다.
3. 실무교섭위의 진행 방식, 교섭의제에 대한 사안별 교섭 및 합의, 단체 협약안 작성, 차기 교섭 일정 등을 협의한다.

**제4조(교섭위원의 수)** 본교섭위는 양측 각각 10명 이내로, 실무교섭위는 양측 각각 6명으로 하고, 교섭의 성립은 양측 중 일방의 참석 교섭위원이 2/3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해 교섭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
- 제5조(교섭위원의 자격 및 통보)** ① 교섭의 당사자는 본교섭위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며, 위임할 수 있다.
- ② 교육감측 본교섭위 위원은 교섭 의제 소관 담당 과장(담당관, 조정관, 감사관 포함) 이상으로 하며, 실무교섭위는 교섭의제 소관 장학관·사무관 이상으로 한다. 단, 위임할 수 있다
- ③ 실무교섭위 교육감측 대표는 교섭 의제 소관 국장(교육정책국장 또는 행정지원국장) 또는 담당관, 조정관, 감사관으로 하며, 노동조합 대표는 노동조합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.
- ④ 교섭위원 명단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상호 통보하되, 이후 변동이 있을 시 교섭 2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명단을 통보한다. 명단에는 소속기관(학교명), 직위(급), 성명,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⑤ 교육감은 노동조합에서 선임한 교섭위원의 명단을 소속학교에 공문으로 통지한다.

- 제6조(교섭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장소)** ① 제1차 본교섭위는 월 일 시에 개회한다.
- ② 제1차 실무교섭위 개최 시기는 제1차 본교섭위를 개최한 후 협의 결정한다.
- ③ 실무교섭 주기는 주1회로 한다.
- ④ 본교섭위 장소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 한다.
- ⑤ 교섭 시간은 14:00에 시작하여 18:00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7조(제1차 본교섭위의 진행)** 제1차 본교섭위 진행은 개회의 성격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
1. 개회
2. 국민 의례
3. 대표위원 인사 및 교섭위원 소개(교육감측, 노동조합측 순)
4. 경과 보고(사회자)
5. 폐회

**제8조(의사 진행 방식)** ① 교섭당사자는 교섭에 있어 평화교섭 및 성실교섭의 의무를 진다.

- ② 좌석은 양측이 마주 보도록 배치한다.
- ③ 사회는 공무원단체담당부서에서 맡아 진행하며, 사회자의 권한은 의례적인 절차만으로 한다.
- ④ 발언은 제안, 질의, 답변, 보충질의, 답변 순으로 하되, 교육감과 노동조합 측이 교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원활한 교섭을 위하여 교섭 장소의 정숙 유지는 교섭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책임을 진다.
- ⑥ 본교섭위와 실무교섭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양측의 합의하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- ⑦ 양 당사자는 교섭 진행 상황을 녹취, 속기,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.
- ⑧ 양 당사자는 본교섭위 및 실무교섭위에 참관인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참관인 수는 양측이 사전 합의하에 결정하고, 참관인은 발언은 할 수 없다.
- ⑨ 내부 의견 조율이나 휴식 등을 위하여 정회할 수 있다.

**제9조(간사 선정 및 역할)** 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각 1인을 간사로 선정한다.  
② 간사는 본교섭위와 실무교섭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섭일시 및 장소, 교섭진행절차, 교섭 진행방식 등 협의한다.

**제10조(교섭 연기 통보)** 정해진 일자에 교섭을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2일 전까지 통보하고 3일 이내 연기할 수 있다.

**제11조(편의 제공)** 교섭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회의실 준비 및 인터넷과 전화를 제공한다.

**제12조(합의 방식)** 매 교섭 결과는 서면으로 2부 작성하여 양측 대표자가 서명을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 이 경우 교섭 결과에 대한 명칭은 '본교섭위 결과', '실무교섭위 결과'로 한다.

**제13조(합의서의 해석)** ① 본 합의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률적 해석이나 노사양측의 합의에 따른다.

② 본 합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교섭위원회에서 노사양측이 협의하여 정한다.

2013년 월 일

경상북도교육감의

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의

위임을 받은

위임을 받은

행정지원과장 김일동(인)

경북교육노조 사무총장 정원상(인)